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39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피고가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8,648,490원 및 그 가산세 15,808,410원, 지방교육세 9,864,840원 및 그 가산세 594,3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이라는 상호로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7. 12. 31. 원고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위 현물출자를 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그 내용은 B이 C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그 출자가액에 상당한 원고의 보통주식을 부여받기로 하는 것으로, 출자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다(표시된 부동산들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그 중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

[현물출자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redacted]도 [redacted]시 D 공장용지 4,711 ㎡
2. 토지
[redacted]도 [redacted]시 E 공장용지 904.4 ㎡
3. 토지
[redacted]도 [redacted]시 F 공장용지 76.5 ㎡
4. 건물
[redacted]도 [redacted]시 D, E, F 지상 G동
[도로명 주소] [redacted]도 [redacted]시 H
일반철골구조, 기타강구조(조립식판넬조), 기타지붕(판넬) 2층 공장, 창고, 연구실, 실험실, 사무실, 기숙사, 통로
1층 561.18 ㎡, 2층 486 ㎡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창고 700 ㎡
5. 건물
[redacted]도 [redacted]시 D, E, F 지상 I동
[도로명 주소] [redacted]도 [redacted]시 H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2층 사무실, 휴게실, 기숙사
1층 104.72 ㎡, 2층 91.2 ㎡

나. B은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출자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목적물의 순자산 평가액인 963,761,451원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하며 B은 그 액수에 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당하는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후 현물출자계약이 이행되어 2018. 4. 20. 원고가 설립되었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부지에 가설건축물 2개동(연면적 175.79㎡, 69.30㎡)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고, 원고가 설립된 이후로는 원고가 이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위 각 가설건축물을 이하 '쟁점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쟁점 가설건축물은 현물출자계약서나 현물출자 재산 평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현물출자 대상에 관한 감정평가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4항(이 규정을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다.

마.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위 감면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원고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인 C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누락된 쟁점 가설건축물(가액을 합계 19,362,110원으로 보았다)을 C의 자산항목에 반영하게 되면 원고의 자본금이 C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 통지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8. 12. 12.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앞서 통지한대로 2019. 1. 8. 원고에게 취득세 114,456,900원(가산세 15,808,410원 포함), 지방교육세 10,459,190원(가산세 594,350원 포함)의 부과를 고지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였다(이 부과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전부가 아니라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것만을 의미하는데, 쟁점 가설건축물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자본금은 결국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다. 이와 달리 위 가설건축물의 가액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현물출자자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현물출자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현물출자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법인이 현물출자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 중 일부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나. 앞서 보았듯이 쟁점 가설건축물은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현물출자계약서나 현물출자 재산 평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물론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B이 현물출자 대상 재산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모두 이행되었다. 이와 같이 B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가도 모두 지급된 이상 원고의 자본금이 현물출자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우려도 없다.

그렇다면 쟁점 가설건축물은 이 사건 현물출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인 C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같은 금액이다), 원고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 전환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쟁점 가설건축물이 이 사건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제하여 위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 · 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